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51
----------	------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기금 관리 운용부서 정비를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함(안 제4조)
- 나. 기금의 관리·운용과 기금관리담당공무원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함(안 제7조 및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협의사항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24. 6. 7. ~ 6. 27.)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안아영(☎ 2133- 8321)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무중”을 “사무 중”으로, “포함)및”을 “포함)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자산담당관”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획조정실”을 “도시공간본부”로 한다.

제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한”을 “관한 다음 각 호의”로, “의거”를 “따라”로,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를 “둔다”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을 “도시공간본부장”으로, “공공자산담당관”을 “도시계획과장”으로, “자 중”을 “사람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예산부서 및 기반시설설치기금”을 “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를 “담당사무관이 맡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위촉직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회의는”을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수당과”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위원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2024년 7월 1일 시행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제7조제1항과 제9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운영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4년 12월 31일</u>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 <u>2029년 12월 31일</u>----- ----- . ----- ----- ----- ----- ----- .</p>
<p>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u>사무중</u>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p> <p>1. 기금운용관 : <u>기획조정실장</u></p> <p>2. 분임기금운용관 : <u>공공자산담당관</u></p> <p>3. 기금출납원 : <u>기획조정실</u> 기금담당사무관</p> <p>② (생략)</p>	<p>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 ----- ----- . ----- ----- <u>사무 중</u> ----- ----- <u>포함</u>) 및 ----- ----- ----- ----- ----- ----- ----- ----- .</p> <p>1. ----- <u>도시공간본부장</u></p> <p>2. ----- <u>도시계획과장</u></p> <p>3. ----- <u>도시공간본부</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p>	<p>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p>

현행	개정안
<p>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4. (생략)</p> <p>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공자산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생략)</p> <p>2. 도시계획, 주거환경 개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p> <p>3. 예산부서 및 기반시설설치기금과 직접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p> <p>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 사무</p>	<p>및 기능) ----- 관한 다음 각 호의 ----- ----- ----- 따라 ----- ----- ----- 둔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도시공간본부장----- ----- 도시계획과장----- ----- 사 람 중----- -.</p> <p>1. (현행과 같음)</p> <p>2. ----- ----- 사람</p> <p>3. 기금----- -----</p> <p>③ ----- ----- ----- 담당사무</p>

현행	개정안
<p><u>관으로 한다.</u></p> <p>④ <u>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u></p> <p>제11조(위원회 운영) ① <u>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u></p> <p>②·③ (생략)</p> <p><u><신설></u></p> <p>④·⑤ (생략)</p> <p>⑥ <u>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제12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u>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u></p>	<p><u>관이 맡는다.</u></p> <p>④ <u>위촉직 위원----- 한 차례만 연임-----.</u></p> <p>제11조(위원회 운영) ① ----- <u>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u></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u>위원장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p> <p>⑦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 <u>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u></p> <p>제12조(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u>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u></p>

현행	개정안
<p><u>다.</u></p> <p><u>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에 있는 경우</u></p> <p><u>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p> <p><u>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u></p> <p><u>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u></p>	<p><u>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u></p>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연장과 조직개편에 따른 운영부서를 변경하는 사항을 일부개정하여 보완하려는 것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안아영(02-2133-8321)